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45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18. 5. 24.
판 결 선 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710,714,010원의 부과처분 중 62,079,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7

가. ○○○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은 2007년 12월경부 터 ○○시 ○○면 ○○리 ○○-2 외 4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라 한 다)를 부지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 소외 주식회사 ○○○○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6. 10.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골프장을 승계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분 토지 재산세 710,714,0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재산세 710,714,01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취득세 중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승계취득의 경우가 제외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중과를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승계취득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7

산세 중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승계취득한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조항으로서, 같은 항 제3호 다목은 관련 규정을 지칭하여 그 '과세 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 위 조항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나 요건을 재산세에 그대로 준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매년 재산세의 과세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중과세율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재산세의 납부의무 및 그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14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과세 요건과 목적을 달리한다.

② 원고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제3호 다목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7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 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지칭하여 그 '과세 대상'을 인용하고 있을 뿐, 재산세 부과 여부 또는 중과 여부까지 인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어디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준용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대상의 구분 등'이라는 표제 아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이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조문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분리과세의 대상을 적시하는 조항일 뿐이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나 요건을 재산세의 경우에 그대로 준용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도 없으며, 달리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을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찾을 수 없다.

④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라는 규정은 위 개정을 통해 괄호 부분이 삭제된 채 현재와 같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이 그 문구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사실상 운영 중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적용에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재산세 중과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이 부분이 재산세 중과의 효력 범위를 정한 것이어서 취득세 관련 내용 준용의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을 명백히 하는 법률 개정으로 해석될 뿐, 재산세의 납부 요건과 그 세율 등 재산세 중과의 효력범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7

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 제도는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세정책상 세수 확보 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문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산세 중과 제도는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과세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승계취득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⑥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골프장으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경우와 승계취득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보유하는 재산의 종류와 담세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취득의 방식에 따라 재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호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7

판사 공두현

판사 김길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7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9장 재산세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7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